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 위원



#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 의견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결산검사 의견서 1부.



2024. 4.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 위원

대표 위원 **엄 셋 별** (구의원)

검사 위원 **김 현 호** (세무사)

검사 위원 **신 원 준** (세무사)

검사 위원 **송 재 호** (세무사)

금천구청장 귀하

#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24년 3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3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3회계연도 금천구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금천구 재정규모의 적정성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금천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엄셋별



검사위원

김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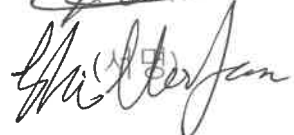
검사위원

송재호



검사위원

신원준



# 목 차

<b>I. 결산검사 경과</b> .....	<b>2</b>
<b>II. 결산검사 총괄 현황</b> .....	<b>4</b>
1. 세입·세출 결산 .....	4
2. 기금의 결산 .....	8
3. 재무제표의 결산 .....	9
4. 성과보고서 .....	9
5. 결산서 첨부서류	
가. 금고의 결산 .....	10
나. 채권 .....	10
다. 채무 .....	10
라. 세입세출외현금 .....	11
마. 공유재산 .....	11
바. 물품 .....	11
<b>I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b> .....	<b>12</b>
1. 세입·세출 결산 분야 .....	12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2
나. 세입결산 분야 .....	14
다. 세출결산 분야 .....	19
2. 기금의 결산 분야 .....	29
3. 재무제표의 결산 분야 .....	31
4. 성과보고서 분야 .....	33
5. 공유재산 분야 .....	34
6. 기 타 .....	35

# 1.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4. 3. 22. ~ 4. 21. (30일간)

##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엄 셋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li> </ul>	구의원
검사위원	김 현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제표 검토</li> <li>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 검사 - 본청(행정지원과 외 11개 부서)</li> </ul>	세무사
검사위원	신 원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보고서 검토</li> <li>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 검사 - 의회사무국 - 본청(주민안전과 외 12개 부서)</li> </ul>	세무사
검사위원	송 재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보고서 검토</li> <li>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 검사 - 의회사무국 - 본청(구의회 외 12개 부서)</li> </ul>	세무사

## 3. 결산검사 세부일정

일 자	검 사 내 용	일 자	검 사 내 용
3. 22. ~ 3. 24.	자료검토	4. 03.(수)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3. 25.(월)	구의회,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4. 04.(목)	자료검토
3. 26.(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4. 05.(금)	부동산정보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3. 27.(수)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 기획예산과	4.06.(토)~07.(일)	자료검토
3. 28.(목)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구금과)	4. 08.(월)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3. 29.(금)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	4. 09.(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3. 30.(토) ~ 31.(일)	자료검토	4. 10.(수)	제외 (선거)
4. 01.(월)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4.11.(목)~4.18.(목)	검사의견서 작성·제출
4. 02.(화)	아동청소년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4.19.(금)~4.21.(일)	검사자료 정리 및 검사의견서 작성제출

####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토의



#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 1. 세입·세출 결산

금천구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기금포함)

(단위 :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세입	650,687,180	866,183,017	833,985,968	914,930,443	950,392,133
	세출	509,023,474	698,297,653	663,511,014	686,701,441	728,633,646
	결산상잉여금	141,663,706	167,885,364	170,474,954	228,229,002	221,758,486
소계	세입	643,165,476	833,581,608	821,253,761	903,992,899	939,282,403
	세출	502,826,173	686,486,999	655,249,227	676,766,981	719,070,318
	결산상잉여금	140,339,303	147,094,609	166,004,534	227,225,918	220,212,085
일반회계	세입	624,730,329	816,702,159	808,844,989	887,199,647	902,765,906
	세출	495,030,501	675,105,780	647,451,263	667,761,923	706,977,285
	결산상잉여금	129,699,828	141,596,379	161,393,726	219,437,724	195,788,620
특별회계	세입	18,435,147	16,879,449	12,408,773	16,793,252	36,516,497
	세출	7,795,672	11,381,219	7,797,964	9,005,058	12,093,033
	결산상잉여금	10,639,475	5,498,230	4,610,808	7,788,194	24,423,464
기금	세입(수입)	7,521,704	32,601,409	12,732,206	10,937,544	11,109,730
	세출(지출)	6,197,301	11,810,654	8,261,787	9,934,460	9,563,328
	결산상잉여금	1,324,402	20,790,755	4,470,419	1,003,084	1,546,401





## 나. 세입·세출결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907,504,542,186	939,282,403,857	719,070,318,639	220,212,085,218
일반회계	871,278,405,646	902,765,906,394	706,977,285,639	195,788,620,755
특별회계	36,226,136,540	36,516,497,463	12,093,033,000	24,423,464,463

회 계 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40,295,193,340	41,493,613,360	28억	8,254,748,246	△854,022,640		128,222,552,912
일반회계	40,295,193,340	38,049,025,250	28억	8,224,906,056	△851,142,640		107,270,638,749
특별회계	-	3,444,588,110	-	29,842,190	△2,880,000		20,951,914,163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39,282,403,857원**으로 예산현액 907,504,542,186원보다 31,777,861,671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6.5%인 719,070,318,639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0,212,085,218원**입니다.
- 이 중 **명시이월비 40,295,193,340원, 사고이월비 41,493,613,360원, 계속비이월 2,800,000,00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7,400,725,606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 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28,222,552,912원**입니다.

### 세입결산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세입결산액) (C)	증 감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C-A)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C-B)		
합 계	907,504,542,186	967,724,060,157	939,282,403,857	31,777,861,671	△48,441,656,300	3,743,348,120	24,698,308,180
일반회계	871,278,405,646	923,141,344,634	902,765,906,394	31,487,500,748	△20,375,438,240	3,177,016,190	17,198,422,050
특별회계	36,226,136,540	44,582,715,523	36,516,497,463	290,360,923	△8,066,218,060	566,331,930	7,499,886,130

### 세출결산(예산기준)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 (D)	예산상 보조금반납금 (E)	예산상 집행잔액 (F)	비고
합계	907,504,542,186	719,070,318,639	84,588,806,700	8,254,748,246	95,590,668,601	
일반회계	871,278,405,646	706,977,285,639	81,144,218,590	8,224,906,056	74,931,995,361	
특별회계	36,226,136,540	12,093,033,000	3,444,588,110	29,842,190	20,658,673,240	

### 세출결산(실 수납액 기준)

(단위 : 원)

구분	수납액 (세입결산)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 (D)	실제 보조금반납금 (국시비)(E)	실제 집행잔액 (구비)(F)	순세계 잉여금 (G=B-C-D-E)
합계	939,282,403,857	719,070,318,639	84,588,806,700	7,400,725,606	96,444,691,241	128,222,552,912
일반회계	902,765,906,394	706,977,285,639	81,144,218,590	7,373,763,416	75,783,138,001	107,270,638,749
특별회계	36,516,497,463	12,093,033,000	3,444,588,110	26,962,190	20,661,553,240	20,951,914,163

※ 순세계잉여금 = 초과세입금(수납액-예산현액) + 실제 집행잔액

### 다.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회계별	계	기편성예산	추경재원조정액	비고
합계	128,222,552,912	97,666,681,000	30,555,871,912	
일반회계	107,270,638,749	78,215,001,000	29,055,637,749	
특별회계	20,951,914,163	19,451,680,000	1,500,234,163	

-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128,222,552,912원**으로서 2024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일반회계 78,215,001,000원**과 **특별회계 19,451,680,000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29,055,637,749원**과 **특별회계 1,500,234,163원**을 합한 **30,555,871,912원**이 2024년도 추경재원으로 편성 가능한 금액입니다.

## 라. 예비비 지출

-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8,431,748,000원으로서 전년도 32,473,993,000원보다 15,957,755,000원 증가하였으며, 「생활보장 부가지원사업」으로 130,000,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19,500,00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10,500,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지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48,431,748,000	130,000,000	119,500,000	0	10,500,000
일반 회 계	48,331,748,000	130,000,000	119,500,000	0	10,500,000
특별 회 계	100,000,000	0	0	0	

## 마.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4회계연도로 사업별 이월 사업비는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 등 총 135건인 84,588,806,70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는 「관용차량 운영」 등 총 40,295,193,34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효율적인 청사 관리」 등 41,493,613,360원, 계속비이월은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등 2,800,000,000원 입니다.

(단위 : 원)

회 계 별	총합계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84,588,806,700	40,295,193,340	41,493,613,360	2,800,000,000
일반 회 계	81,144,221,590	40,295,193,340	38,049,025,250	2,800,000,000
특별 회 계	3,444,588,110	-	3,444,588,110	-

## 2. 기금의 결산

○ 본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말 39,960,529,938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1,109,730,656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563,328,975원이고

차입잔액은 1,546,401,681원으로서 그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39,960	1,546	11,109	9,563	41,506
남북교류협력기금	153	52	53	1	205
재난관리기금	6,814	△984	1,153	2,137	5,83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800	2,743	2,743	0	20,543
청년미래기금	2,060	63	114	50	2,124
중소기업육성기금	5,911	△853	4,066	4,919	5,058
자활기금	916	184	233	49	1,100
노인복지기금	351	1	8	7	352
양성평등기금	461	△32	9	41	429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477	△6	23	29	471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309	39	41	2	348
옥외광고발전기금	1,134	△133	148	281	1,001
도로굴착복구기금	2,691	486	2,418	1,932	3,177
식품진흥기금	883	△15	100	115	868

### 3. 재무제표의 결산

- 2023회계연도 금천구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순자산이 전년대비 524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전년대비 3.2% 증가했으며, 재정운영 결과 (총비용-총수익)인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24,04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제표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3년	1,702,749	27,157	1,675,592	693,275	646,280	△46,994
2022년	1,662,759	39,605	1,623,153	718,436	647,395	△71,041
증 감	39,990	△12,448	52,439	△25,161	△1,115	24,047

### 4. 성과보고서 결산

- 2023년도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5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2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719,070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달성	달성	미달성			
계	10	51	127	16	96	15	719,070	676,766	42,303
민원감사담당관	1	1	3	0	2	1	195,444	135,424	60,019
소통 담당관	1	1	3	0	3	0	3,595	3,238	357,607
행정안전국	1	8	25	4	18	3	154,546	139,162	15,383
기획경제국	1	7	22	3	12	7	30,789	47,144	△16,354
복지가족국	1	8	15	0	15	0	353,460	340,222	13,237
푸른미래도시국	1	7	15	0	15	0	32,763	27,951	4,812
문화환경국	1	8	15	3	10	2	61,092	54,354	6,738
교통건설국	1	6	15	3	12	0	60,793	35,114	25,697
보건소	1	4	11	2	7	2	18,203	26,625	△8,421
의회사무국	1	1	3	1	2	0	3,630	2,819	811



## 5. 결산서 첨부서류

### 가. 금고의 결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인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통보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합니다.

(단위 : 원)

회계별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잔액(금고보관액)(A-B)
합 계	939,282,403,857	719,070,318,639	220,212,085,218
일반회계	902,765,906,394	706,977,285,639	195,788,620,755
특별회계	36,516,497,463	12,093,033,000	24,423,464,463
의료급여기금	730,024,760	656,494,690	73,530,07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01,411,690	24,558,000	576,853,690
주차장	35,185,061,013	11,411,980,310	23,773,080,703

### 나. 채권(재무결산)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5,599,440,365원에서

당해연도 9,259,504,113원이 발생하고 8,619,897,645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239,046,833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15,599,440,365	9,259,504,113	8,619,897,645	16,239,046,833
일반회계	5,118,728,822	524,226,180	774,753,360	4,868,201,642
특별회계	616,866,000	23,158,000	18,421,000	621,603,000
기금	9,863,845,543	8,712,119,933	7,826,723,285	10,749,242,191

### 다. 채무

「지방재정법」 제8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08조에 의한 2023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 라.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단위 :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A+B)
		계(B=C-D)	증가액(C)	지출액(D)	
합 계	4,464,431,237	1,159,978,327	15,809,818,487	14,649,840,160	5,624,409,564
보 증 금	0	0	0	0	0
보 관 금	3,895,869,057	1,163,602,937	9,053,687,397	7,890,084,460	5,059,471,994
잡 증 금	568,562,180	△3,624,610	6,756,131,090	6,759,755,700	564,937,570

## 마. 공유재산

2023년도말 현재 종류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054,322㎡ 775,673,914,539원

건물 157,296㎡ 293,114,238,441원

기타 817건 100,399,357,997원

총 1,169,187,510,977원이며 아래표는 용도별 현황입니다.

(단위 : 원)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087,412,984,160	89,663,481,616	7,888,954,999	1,169,187,510,977	
행정 재산	계	1,066,375,983,720	25,913,025,609	6,740,635,999	1,085,376,373,330
	공용재산	247,548,769,662	13,015,559,409	282,790,650	260,281,538,421
	공공용재산	818,827,214,058	12,897,466,200	6,457,845,349	825,266,834,909
	일반재산	21,037,000,440	0	1,148,319,000	19,888,681,440
건설중 재산	건설중 자산		63,750,456,207	0	63,750,456,207

※ 2022년말 현재액 1,108,414,551,804원 중 21,001,567,644(건설중인 재산) 금액이 올해 결산상 시스템에서는 당해연도 증감액에 자동 포함되어 계산됨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이 1,087,412,984,160원으로 추출됨

## 바. 물품

(단위 : 개, 원)

구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물품 증감 현황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득	처분		증감	
			구매/관리전환/기타	매각/관리전환		
수량	1,615	402	-	14	388	2,003
금액	11,211,636,770	169,910,000	-	5,347,000	164,563,000	11,376,199,770

# I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 1. 세입·세출 결산 분야

###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 5년간 세입·세출예산 평균증가율 및 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년평균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세 입	643,165	17.59	833,582	29.61	821,254	△1.48	903,993	10.07	939,282	3.90	9.9	
세 출	502,826	19.62	686,487	36.53	655,249	△4.55	676,767	3.28	719,070	6.25	9.4	
결산상 잉여금	계	140,339	10.88	147,095	4.81	166,005	12.86	227,226	36.88	220,212	△3.08	11.9
	이월액	52,831	5.61	65,338	23.67	68,656	5.08	74,504	8.52	84,588	13.53	12.5
	보조금 실제반납금	8,027	14.79	14,762	83.9	10,694	△27.56	20,734	98.88	7,400	△64.3	-2.0
	순세계 잉여금	79,481	14.27	66,994	△15.71	86,655	29.35	131,988	52.31	128,222	△2.85	12.7

-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5년평균 증가율을 보면 세입예산은 9.9%, 세출예산은 9.4%로 세입증가율이 세출증가율보다 0.5% 높으며, 매년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및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 2022회계연도는 초과세입금이 64,006백만원인데 반해 2023회계연도는 초과세입금이 31,77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2,22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초과세입금 31,777백만원 중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조정교부금의 초과세수는 25,716백만원으로 초과세입금의 80.9%이며 전년보다 10.4%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초과세입금 5,998백만원 중 임시적 세외 수입이 1,092백만원 이고 이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1,060백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이어지니, 예산편성시 누락이 없도록 하여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우리 구의 세수 추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야할 것입니다.

- 당해연도 세입결산액은 939,282백만원이며 5년평균 증가율이 9.9%로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세입결산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크게 증가하여 다음연도 세입처리되고 있는 요인이 큼니다. 2023년 세입이 전년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상 실제수납액 939,282 백만원에서 세출결산상 지출집행액 719,070백만원, 이월액 84,588백만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7,40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순세계잉여금이 3,766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5년 평균 증가율이 12.5%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증가는 예산을 적기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산 적기에 집행하여 이월사업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에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 발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재정분석 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은 2021년 38,661백만원 2022년 67,431백만원 74.4%, 2023년 95,590백만원 41.7%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예산편성 시 금천구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반영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적기 집행하고, 24년 추경 편성시 세입경정 및 감추경 등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초과 세입금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시의 적절한 집행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이월액 및 불용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나. 세입결산 분야

### 1) 세수입의 적정성 검토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 납 액			정리 보류액 (F)	미수납액 (G=B-E-F)	비율(%)	
			수납총액 (C)	환급액 (D)	실제수납액 (E=C-D)			E/A	E/B
합 계	907,504,542	967,724,060	939,743,318	460,915	939,282,403	3,743,348	24,698,308	103.5	97.1
일반회계	871,278,405	923,141,344	903,208,936	443,030	902,765,906	3,177,016	17,198,422	103.6	97.8
특별회계	36,226,136	44,582,715	36,534,382	17,884	36,516,497	566,331	7,499,886	100.8	81.9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현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당해연도 103.5%로 전년도(107.6%)대비 4.1% 하향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전년도(97.1%)대비 동일하였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108%에서 당해 연도 103.6%로 4.4% 하향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7.9%에서 97.8%로 0.1% 하향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92.5%에서 당해연도 100.8%로 8.3% 증가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66.0%에서 81.9%로 15.9% 증가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납기 미도래 분 856,415천원은 연말에 수시부과된 금액으로 다음연도에 납기가 도래함으로 실제 수납비율이 낮아지므로 수시부과 금액에 대해 부과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수납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2) 재정규모 및 재정지표

### 재원별 세입수납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년평균 증가율(%)
자체	지방세	83,831	100,537	111,180	122,761	113,387	8.8%
	세외수입	42,205	41,036	45,608	49,634	47,794	9.8%
이전	지방교부세	14,342	13,914	22,651	32,463	22,297	31.3%
	조정교부금	129,990	144,145	157,630	197,016	180,476	13.3%
	보조금	237,171	393,422	337,054	330,594	316,808	15.2%
합 계		507,539	693,054	674,123	732,468	680,762	13.3%

※ 보전지출 및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임

### 재정지표(세입)

(단위 :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정자립도	25.3	24.7	26.3	25.1	<b>23.6</b>
재정자주도	49.4	49.9	50.5	51.0	<b>42.9</b>

-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회계연도부터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체 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23년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0.3%, 금천구는 23.6%이고, 재정자주도는 2022년도에 비해 8.1% 낮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조정교부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지자체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돼 자율성 제한, 자체 정책 추진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지방경제 성장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는 '지방세', '인구', '제조기업 수' 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인센티브 증대 등 금천구의 현실과 어울리는 정책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자체자원(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실제수납액(C)	비율(B/A,%)	비율(C/A,%)
합 계		190,259,126	194,641,963	197,697,995	102.3	103.9
일반회계	소 계	154,032,990	181,556,354	161,181,499	117.9	104.6
	지방세수입	111,721,256	114,297,264	113,387,034	102.3	101.5
	세외수입	42,311,734	67,259,090	47,794,465	159.0	113.0
특별회계	소 계	36,226,136	13,085,609	36,516,496	36.1	100.8
	의료급여기금	682,598	432,508	47,427	63.4	6.9
	주민소득	591,400	35,819	35,819	6.1	6.1
	주차장세외수입	34,952,138	12,617,282	5,557,148	36.1	15.9

○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는 104.6%이며, 특별회계는 100.8%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일반회계는 117.9%, 특별회계는 36.1%입니다.

### 3) 세입금 미수납액 제고방안 검토

#### 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비율(%)	
합 계	199,210,406	25,147,154	12.6	196,641,963	30,059,421	15.3	
일반회계	소 계	186,327,635	17,553,926	9.4	181,556,354	17,197,838	9.5
	지방세수입	123,399,446	559,803	0.5	114,297,264	790,816	0.7
	현 년 도	122,870,651	298,878	0.2	113,672,859	513,689	0.5
	과 년 도	528,795	260,925	49.3	624,405	277,127	44.4
	세 외 수 입	62,928,189	16,994,123	27.0	67,259,090	16,407,022	24.4
	현 년 도	45,884,515	2,505,956	5.5	49,897,793	3,513,276	7.0
	과 년 도	17,043,674	14,488,167	85.0	17,361,297	12,893,746	74.3
	특별회계	세 외 수 입	12,882,771	7,593,227	58.9	13,085,609	6,878,283
현 년 도	5,030,511	502,380	10.0	5,909,283	509,938	8.6	
과 년 도	7,852,260	7,090,847	90.3	7,176,326	6,368,345	88.7	

- 세수확보에 있어서 2023회계연도 전체 징수결정액 967,724백만원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96,641백만원(20.3%)로 2022회계연도(전체 징수결정액 931,425백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99,210백만원(21.4%)) 0.9% 보다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 징수결정액 196,641백만원 중 미수납액은 30,059백만원(15.3%)으로 이는 2022 회계연도에 비하여 2.7% 증가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매년 과년도 미수납액 비중이 높게 차지하므로 지속적인 체납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연 도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무 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법원에 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 류	국외 이주	기타	납기 미도래
2023	합 계	24,698	7,304	1,051	13,072	1,354	0	0	0	9	427	1,478
	일반회계	17,198	6,973	1,051	6,524	1,354	0	0	0	9	427	856
	특별회계	7,499	330	0	6,547	0	0	0	0	0	0	0
2022	합 계	25,764	8,235	411	11,910	2,851	0	0	0	10	1,220	1,127
	일반회계	17,554	7,904	411	4,647	2,851	0	0	0	10	1,220	510
	특별회계	8,210	331	0	7,262	0	0	0	0	0	0	617

- 미수납액에 대한 현실적 개선책 및 적극적인 회수노력과 아울러 회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손처분하여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종결시킴으로써 구민생활을 더 안정되게 하고, 미수납액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감소와 향후 보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 시기 바랍니다.

## 나)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

###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 : 천원)

회 계 연 도	구분	30만원 미 만	30만원 ~ 50만원미만	50만원 ~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운수사업법위반)	합계
2023	건 수	116,586	152	15	6	116,759
	금 액	6,411,343	53,876	8,006	19,978	6,493,202
2022	건 수	50,678	10,588	14,654	31,965	124,389
	금 액	3,846,915	584,526	814,694	1,865,828	7,205,422

### 미수납액 세부내역

2 0 2 3 년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합 계	건 수	116,586	건 수	152	건 수	15	건 수	6
	금 액	6,418,693	금 액	53,876	금 액	8,006	금 액	19,978
운수사업법 위 반	건 수	555	건 수	152	건 수	15	건 수	1
	금 액	88,334	금 액	53,876	금 액	8,006	금 액	4,375
주정차위반	건 수	112,575	건 수	-	건 수	-	건 수	-
	금 액	6,153,985	금 액	-	금 액	-	금 액	-
버 스 전 용 차 로 위 반	건 수	2,980	건 수	-	건 수	-	건 수	-
	금 액	153,980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기 타 (짹홀제등)	건 수	46	건 수	-	건 수	-	건 수	-
	금 액	2,300	금 액	-	금 액	-	금 액	-
차 량 운 행 제 한 위 반	건 수	361	건 수	-	건 수	-	건 수	-
	금 액	18,050	금 액	-	금 액	-	금 액	-
자 동 차 관 리 법 등 위 반	건 수	69	건 수	-	건 수	-	건 수	-
	금 액	2,044	금 액	-	금 액	-	금 액	-
주 차 장 법 이 행 강 제 금	건 수	-	건 수	-	건 수	-	건 수	5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15,603

- 2023년은 3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 건수가 116,586건으로 전체의 99.8%를 차지합니다. 종이 고지서로 우편 발송하는 경우 발송에 필요한 비용이 크고 납세 협력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종이고지외 전자고지로 발송을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비용을 줄이고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6,493,202천원으로 전년대비 712,220천원 감소하였으며, 체납액 중 30만원 미만인 소액이 98.8%에 해당합니다.
-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점차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액이 줄어 들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세입 확보가 필요하여 미회수 건에 대해서는 납세 고지, 독촉 등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미회수되는 수입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앞으로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납세자의 자산 상태 등을 파악하여 사전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 협력 요청 등 강력한 납부 독려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 세출결산 분야

### 1) 세출예산 집행의 적합성 검토

#### 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B)				보조금 반납금 (C)	집행잔액 (D)	비율	
			계(B)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이월 비율 B/A	미 집행률 D/A
합 계	907,504	719,070	84,588	40,295	41,493	2,800	8,254	95,590	9.3	10.5
일반회계	871,278	706,977	81,144	40,295	38,049	2,800	8,224	74,931	9.3	8.6
특별회계	36,226	12,093	3,444	0	3,444	0	29	20,658	9.5	57

-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미집행률) 은 10.5%로 전년(8.0%)대비 2.5% 증가하였고, 다음연도이월액은 9.3%로 전년도(8.9%)보다 0.4% 증가,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도(21,284백만원) 대비 64.3% 감소 하였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 가산동 생활권 공원조성 1,558백만원 불용처리, 호암산 자락생활공원조성 439백만원 전년 명시이월후 전액 불용처리 및 코로나19백신 예방 645백만원 불용 추진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사업변동성을 고려하더라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도 말 교부된 보조금(12월 교부된 금액 6,476백만원) 사업진행이 어려워 전액 이월되는 등 상급기관에서 늦게 교부되어 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교부시점을 건의하는 등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 143조, 지방재정법 제 42조, 제 50조 제3항에 따른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 경비에 대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받지 못해 중도에 멈추는 것을 방지하는 계속비에 대한 이월액에 대해 정해져 있는 지출기한 내에 예산액에 맞는 원인 행위를 하도록 적극적인 노력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및 복합 지원센터 건립 등 대규모 공사사업의 경우 예산액의 큰 비율을 차지하나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간 예산 집행률이 낮은편입니다. 매년 공사 및 용역 기성금에 대하여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 및 집행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맞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사업에 따른 보조금이 해당 구별 규정에 맞도록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잘 못된 산정으로 인한 시비 과다 편성으로 인해 구비 또한 과다하게 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집행 잔액으로 귀결됩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보조금 시비 구비별 짜여진 예산 집행 비율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22년 대비 2023년 예산의 집행잔액(미집행률)이 증가하였습니다. 금천구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이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인 만큼 수지균형이 맞는 예산의 집행이 필요합니다.



- 2023년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업 중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일부에 시상품, 답례품 명목으로 생활필수품에 과도한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체 목적에 맞게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의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바,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을 정하고 있거나, 일반입찰로는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나) 예산 전용 검토**

**회계별 예산 전용내역**

(단위 : 원)

구 분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년	32	1,690,596,000	32	1,690,596,000	-	-
2022년	25	638,392,000	25	638,392,000	-	-
2021년	29	686,494,000	28	686,434,000	1	600,000

- 예산 변경·전용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합니다.
- 예산 전용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기관운영) 보수에서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021백만원, 직급보조비 300백만원 등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는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음에도 적정 편성을 못한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 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가급적 추가 경정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후 집행하는 등 전용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예산의 전용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불요 불급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전용을 통해 이를 처리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대비 2023년 예산 전용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전용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 다) 분야별 세출결산 검토

### 분야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전년대비(%)	2023	전년대비(%)
합 계	655,248	676,767	103.2	719,070	106.2
<b>일반회계</b>	<b>647,451</b>	<b>667,762</b>	<b>103.14</b>	<b>706,977</b>	<b>105.87</b>
일 반 공 공 행 정	91,829	38,964	42.43	40,181	103.12
공 공 질 서 및 안 전	7,195	6,306	87.64	3,905	61.94
교 육	11,999	13,644	113.70	24,765	181.52
문 화 및 관 광	16,106	18,218	113.11	21,726	119.26
환 경 보 호	28,334	31,760	112.09	35,966	113.25
사 회 복 지	313,440	349,628	111.55	366,923	104.95
보 건	18,103	24,274	134.09	16,451	67.77
농 립 해 양 수 산	7,092	5,321	75.02	11,219	210.84
산 업·중 소 기 업 및 에 너 지	14,258	29,772	208.80	8,772	29.47
수 송 및 교 통	12,352	19,145	154.99	36,274	189.47
국 토 및 지 역 개 발	22,741	24,360	107.12	27,081	111.17
기 타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103,997	106,369	102.28	113,708	106.90
<b>특별회계</b>	<b>7,797</b>	<b>9,005</b>	<b>115.48</b>	<b>12,093</b>	<b>134.29</b>
기타 특별회계	7,797	9,005	115.48	12,093	134.29

- 2023년도 금천구 세출은 719,07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2,303백만원(3.28%)이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 706,977백만원 중 사회복지(51.9%) 지출비율이 높습니다.
- 전년대비 지출액 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전년대비 210.84%인 11,21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송 및 교통분야로 전년대비 189.47%인 36,274백만원 지출하였습니다.
-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지출액 비율이 현격히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 라)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48,431,748,000	130,000,000	119,500,000	0	10,500,000
일반회계	48,331,748,000	130,000,000	119,500,000	0	10,500,000
특별회계	100,000,000	0	0	0	0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비비 예산편성을 보면, 일반예비비 3,525백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4,806백만원으로, 1차 추경시 20,927백만원, 2차 추경시 24,502백만원 증액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좀더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고 집행 시에는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예비비를 편성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2020년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예산액은 2,187,025,000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1,688,703,926원으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약 77%, 2021년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은 9,800,000,000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6,853,508,98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약 70%, 그에 비해 2022년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은 28,808,565,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3,803,358,06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약 13.2%에 불과하여, 상당부분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2023년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은 44,806,320,000원으로서 15,997,755,000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44,806,320,000원의 예산액 중 지출액은 0원입니다.
-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일반예비비와 다르게 『지방재정법』제43조2항에 따라 한도 없이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재해와 재난은 그 빈도와 규모 등이 복합적이고 다양해 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은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과도하게 편성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에

그에 상당한 예산만큼 금천구민이 누리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양적 제공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 또한 집행 계획이 없는 예비비를 쌓아두지 말고 다른 곳에 편성·지출하는 경우 금천구의 재정승수효과를 도모 할 수 있다는 점, 지자체에 특별한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특별교부세를 편성해 각 지자체에 배분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편성과 지출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2) 세출구조 집행내역 검토

### 가)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

(단위 : 천원, %)

성 질 별	2022결산액	비율	2023 결산액	비율
합 계	676,766,981	100	719,070,318	100
인 건 비	95,322,402	14.1	96,451,649	13.4
물 건 비	44,274,217	6.5	43,984,628	6.1
경 상 이 전	445,115,595	65.8	437,698,477	60.9
자 본 지 출	71,514,152	10.6	96,779,913	13.5
용 자 및 출 자	82,868	0.0	23,158	0.0
내 부 거 래	6,482,287	1.0	25,116,097	3.5
예비비 및 기타	13,975,459	2.1	19,016,394	2.6

-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액 중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이전금인 경상이전 지출액이 전체의 60.9%로 전년대비 4.9% 감소,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2.9% 증가, 예비비 및 기타 지출액은 전년대비 0.5% 증가 하였습니다.
- 경상비인 인건비와 물건비를 제외하고 전체 예산대비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이 전체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보조금,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민간대행사 업비 등으로, 단체나 복지기관 등에서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지출액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 등이 해당 단체에 있으므로 예산집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부터 향후 집행비 정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특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목적, 금액 등 적정 여부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지원 단체, 지원액이 매년 큰 변동 없이 지원되고 있어 적정 집행 지도 및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나)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 인력운영비(기관운영)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0,205,284	96,333,371	3,871,913	의회포함/ 무기계약직 제외
2022	90,031,325	84,365,554	5,665,771	
2021	87,024,715	81,383,683	5,641,032	

※ 인력운영비(과)(무기계약직 보수)는 제외

### 연금부담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당초	성립후증감	현액			
2023	15,813,026	1,021,699	16,834,725	16,769,622	65,103	의회 포함
2022	13,781,451	-	13,781,451	13,780,648	803	
2021	11,585,701	464,255	12,049,956	12,049,956	-	

### 공무원 연금부담금 산정 예산액 3개년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연금부담금 추가부담*)
2023	82,113,763	79,439,504	2,674,559	440,500
2022	80,180,630	73,534,800	6,645,830	940,784
2021	78,803,406	72,926,330	5,877,076	719,472

#### \* 연금부담금 추가부담 산정근거

- 2023년 연금부담금 9%, 보전금 7.277%, 퇴직수당부담금 3.3553%, 재해보상부담금 0.193%
- 2022년 연금부담금 9%, 보전금 4.973%, 퇴직수당부담금 3.6963%, 재해보상부담금 0.183%
- 2021년 연금부담금 9%, 보전금 3.076%, 퇴직수당부담금 2.9186%, 재해보상부담금 0.166%

- 인건비 예산편성 시 전년도 공무원 총현원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휴·복직자 수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매년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저해됩니다. 2023년도 감추경하는 등 노력을 하고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금부담금은 예산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집행잔액에 대하여도 연금부담금을 아직도 부담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현원 기준뿐만 아니라 전년도 집행잔액 등 감안하여 편성하는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집행잔액에 대한 연금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보조금반환명세서 검토

#### 보조금 반납 처리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결산내역				2023년 반환내역	차이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초과반납	미반납
합 계	288,869,683	271,279,465	1,757,371	15,832,846	12,017,639	879,277	4,694,485
국 비	170,737,306	164,189,692	722,756	5,824,857	4,772,748	217,171	1,269,280
시 비	118,132,377	107,089,772	1,034,615	10,007,988	7,244,891	662,106	3,425,204

○ 2022년 결산상 보조금 잔액과 2023년도 편성된 보조금 반납액이 2,133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이월사업으로 추후 반납금 편성, 지난년도 미반납금 재편성, 당해연도 보조사업의 조기완료로 집행잔액 반납금 편성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며, 그 외 예탁금 등 민간이전비 집행잔액이 출납정리기간에 반환되지 않아 집행잔액에 미포함되어 추후 정산반환금으로 반납액에 편성되고, 직원보직 변경시 인수인계 등이 잘 되지 않아 적기에 반환되지 않는 경우 등임

○ 예탁금 및 위탁금 등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민간이전비를 교부받는 기관,단체 등에 년도말까지 지출마감을 하고 출납정리기간인 1월 20일까지 정산을 받아 결산상 집행잔액과 다음년도 반환금액의 차이를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부득이하게 정산이 늦어져 집행잔액에 미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 정산잔액을 즉시 세입처리하여 불필요하게 금고가 아닌 과통장에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2. 기금의 결산 분야

(단위 : 천원, %)

기금명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비율 (B/A)
		계 (C=A-B)	조성액 (A)	사용액 (B)		
<b>계</b>	39,960,529	1,546,402	11,109,730	9,563,328	41,506,931	86.1
남북교류협력기금	153,218	52,669	53,719	1,050	205,887	2.0
재난관리기금	6,813,510	△ 984,012	1,153,264	2,137,276	5,829,498	185.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799,987	2,742,979	2,742,979	-	20,542,966	0.0
청년미래기금	2,060,176	63,413	113,589	50,176	2,123,589	44.2
중소기업 자활기금	5,911,786	△ 853,278	4,065,877	4,919,155	5,058,508	121.0
노인복지기금	916,250	184,245	233,494	49,249	1,100,495	21.1
양성평등기금	351,435	507	7,884	7,377	351,942	93.6
양성평등기금	461,077	△ 31,350	9,124	40,474	429,727	443.6
환경공무원재해보상기금	476,551	△ 5,117	23,082	28,199	471,434	122.2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08,954	38,753	41,079	2,326	347,707	5.7
육외광고발전기금	1,133,679	△ 132,942	148,247	281,189	1,000,737	189.7
도로굴착복구기금	2,690,685	486,382	2,417,872	1,931,490	3,177,067	79.9
식품진흥기금	883,221	△ 15,847	99,520	115,367	867,374	115.9

### 기금운용 사용실적 현황

기금명(5개)	최초설치년도	사용비율(사용액/조성액, %)				
		2019	2020	2021	2022	2023
남북교류협력기금	2019	-	-	17.8	0.24	0.68
청년미래기금	2019	-	-	-	-	2.4
노인복지기금	1999	1.39	0.7	1.11	2.07	2.1
양성평등기금	2004	1.36	1.26	12.74	10.91	8.78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대금	1995	20.89	3.89	4.65	2.39	0.75

-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를 보면 전년도말 조성액(39,960백만원) 대비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9,563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전년도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각 기금은 궁극적으로 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2023년도 기금조성 총액과 기금사용액, 그리고 기금잔액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청년미래기금의 경우 사용실적이 없고, 일부 기금의 경우 사용실적이 저조합니다.
- 예산 편성 시 기금조성 목표액 도달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금별 수입·지출계획을 파악 및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사용액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며, 기금 목적사업 기간을 검토하여 사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기한 도래시 존폐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3. 재무제표의 결산 분야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b>자 산</b>	<b>1,662,759</b>	<b>1,702,749</b>	39,990	102.4
I. 유 동 자 산	298,753	295,444	△3,309	98.9
II. 투 자 자 산	12,339	12,961	622	105.0
III. 일반유형자산	179,867	179,679	△188	99.9
IV. 주민편의시설	447,393	487,975	40,582	109.1
V. 사회기반시설	717,355	720,506	3,151	100.4
VI. 기타비유동자산	7,053	6,185	△868	87.7
<b>부 채</b>	<b>39,546</b>	<b>27,157</b>	△12,389	68.7
I. 유 동 부 채	23,838	12,717	△11,121	53.3
II. 장 기 차 입 부 채	-	-	-	-
III. 기타비유동부채	15,708	14,440	△1,268	91.9
<b>순 자 산</b>	<b>1,623,213</b>		△1,623,213	0.0
I. 고 정 순 자 산	1,349,608	1,392,992	43,384	103.2
II. 특 정 순 자 산	50,077	52,791	2,714	105.4
III. 일 반 순 자 산	223,528	229,809	6,281	102.8

○ 당해연도 말 현재 금천구청의 총자산과 부채는 1,702,749백만원과 27,15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자산은 39,990백만원 증가, 부채는 12,389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유동자산 및 주민편의시설이 각각 3,309백만원 감소, 40,58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부채의 경우 유동부채가 11,121백만원, 비유동부채는 1,268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당해연도 말 현재 총수익은 693,27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161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전년 대비 794백만원 감소, 정부간 이전수익은 29,794백만원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수익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총비용은 646,280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15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운영비 및 민간등이전비용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수익과 비용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당해연도 말 재정운영결과는 △46,994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4,04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	2023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가-나)	188,073	194,386	6,313	103.4
II. 관리운영비	117,448	122,289	4,841	104.1
III. 비배분비용	18,868	18,743	△125	99.3
IV. 비배분수익	12,673	21,649	8,976	170.8
V. 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311,716	313,769	2,053	100.7
VI. 일반수익	382,757	360,763	△21,994	94.3
VII. 재정운영결과 (V-VI)	△71,041	△46,994	24,047	66.2

○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23회계연도 금천구의 사업순원가는 194,386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122,289백만원), 비배분비용(18,743백만원) 및 비배분수익(21,649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13,769백만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60,763백만원을 차감한 2023회계연도 금천구의 재정운영결과는 △46,994백만원입니다.

○ 2023회계연도 금천구의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의 △71,041백만원보다 24,047백만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무제표 검토자의 의견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재무제표 검토인도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로 검토인의 의견을 신뢰하였습니다. 재무제표 검토인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실과소의 담당직원들이 자산, 비용 등 재무제표 구성요소에 대한 기본적 이해, 관리과목의 특성파악 및 복식부기 결산제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공사비의 지출과정에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지출이 건설중인자산과목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수정하는 등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관심유도를 통해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 4. 성과보고서 분야

- 금천구에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3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금천구는 본 회계연도의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0개)-정책사업목표(51개)-단위사업(12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실국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0	51	127	16	96	15
민원감사담당관	1	1	3	0	2	1
소통 담당관	1	1	3	0	3	0
행정안전국	1	8	25	4	18	3
기획경제국	1	7	22	3	12	7
복지가족국	1	8	15	0	15	0
푸른미래도시국	1	7	15	0	15	0
문화환경국	1	8	15	3	10	2
교통건설국	1	6	15	3	12	0
보건소	1	4	11	2	7	2
의회사무국	1	1	3	1	2	0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능별·사업계획별·활동별로 분류, 편성하여 예산의 지출과 그 지출에 의해 나타나는 성과와의 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예산제도입니다.
- 그런데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위사업 중 예산비중이 큰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과지표 달성율이 100%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과와 예산의 연계성이 없어 의미 없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지표 달성은 100%임에도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을 지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위사업 중 예산비중이 큰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누락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은 과거 추세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해야하고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직전년도에 목표치를 초과달성 한 경우 당해년도에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 한 부서가 대부분이므로 이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몇몇의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직전년도 초과달성 대비하여 그 목표치의 상승률이 크지 않아 합리적인 수준의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합니다.

## 5. 공유재산 분야

### 공유재산 현황(종류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고
		증	감		
합 계	1,087,412,984	89,663,481	7,888,954	1,169,187,510	
토 지	769,187,548	13,577,536	7,091,170	775,673,914	
건 물	281,835,533	11,497,096	218,392	293,114,238	
공 작 물	29,983,688		13,000	29,970,688	
기 타	6,406,215	64,588,849	566,392	70,428,670	

- 2023년 공유재산 분야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토지의 증가사유가 대부분 순수매입인 반면, 감소 사유는 이전 토지개발사업, 합병 등의 사유가 있었으나 그동안 변경내역이 누락되어 대장정리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철저한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 등의 변동내역이 발생할 경우 관리부서의 즉각적인 보고와 총괄부서의 승인으로 이어져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자칫하면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이원화에 따른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총괄부서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의

오차범위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사업심의 이후 사업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재산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 6. 기타

### 가. 부서별 보통예금계좌 관리 철저

각 부서 잔액 300만원이상 보통예금계좌(2023.12.31.)

(단위 : 원)

구분	총	법인카드	보조금 반납	수입금	퇴직적립금	기타
계좌수	58	25	20	5	1	7
금 액	6,927,423,895	533,147,803	1,652,065,417	145,512,048	43,705,823	4,552,992,804

○ 2023. 12. 31. 기준 각부서 잔액 3백만원 이상인 보통예금계좌는 총 58건 6,927백만원으로 민간위탁사업 등 각종 보조금 반납금의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보조금 반납금이나 수입금 등은 예산 반납이나 세외수입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나 미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 매년 같은 사항으로 각 부서에서는 ~~보통예금계좌로~~ 반납된 보조금을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예산 반납하여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수입금은 적절한 시기마다 세외수입처리를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부서 보통예금계좌에 불필요한 잔액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